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23일, 심현정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심현정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칙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의회 규칙과 관련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회의규칙 위임사항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시 조례특위 심의 사항”임을 신설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록포결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포결방법을 기존 “기립 또는 거수”에서 “기명 또는 호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장·부의장 선거, 자격상실 의결, 징계의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명투표로 포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의안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

제30조의 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 단서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48조제2항 중 “**법 제64조**”를 “**법 제73조**”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에**”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본문 중 “**법 제77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중 “**법 제81조**”를 “**법 제93조**”로 한다.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2조(「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개정)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제61조”로 한다.

제3조(「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5조제3항제1호”를 “영 제37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5조제3항제2호”를 “영 제37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35조제3항제3호”를 “영 제37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35조제3항제4호”를 “영 제37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